

인구소멸대응대책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충청북도의회
인구소멸대응대책
특별위원회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충청북도의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필요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체계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I 특별위원회 구성 배경

- 우리나라 인구는 이미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2024년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함.
- 한국의 출산율은 201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에서 더욱 심각한 실정임.
- 충북은 전체 11개 기초지자체 중 6개(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제천)가 행안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체 인구 또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저출생 문제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진입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 경제·산업 경쟁력 약화, 사회복지 비용 부담 증가, 국방력 약화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며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저출산 및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강조됨.
- 이에, 충청도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서 충청북도의회 차원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인구소멸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II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1 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5조(특별위원회)

2 목적

-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막고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 저출생·인구절벽, 지방소멸 관련 정책 점검 및 대책 마련

3 활동범위(사무)

- 저출산, 균형발전, 일자리, 외국인 등 인구정책 관련 사무 전반
 - 주요부서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외국정책추진단, 복지정책과 정책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등

4 위원회 현황

- (활동기간) 2024. 9. 2. ~ 2026. 2. 28.
- (위원구성) 11명 / 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9

연번	구분	소속 상임위원회	성명	지역구
1	위원장	건설환경소방	노금식	음성 2
2	부위원장	정책복지	김종필	충주 4
3	위원	행정문화	김국기	영동
4	“	교육	김성대	청주 8
5	“	건설환경소방	김호경	제천 2
6	“	산업경제	박경숙	보은
7	“	건설환경소방	박용규	옥천 2
8	“	행정문화	안치영	비례
9	“	행정문화	오영탁	단양
10	“	산업경제	이옥규	청주 5
11	“	건설환경소방	이태훈	괴산

Ⅲ

활동 방향

① 인구소멸 관련 충청북도 정책 및 현황 점검

- 저출산, 균형발전, 일자리, 외국인 등 충청북도의 인구정책 관련 사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등

②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유관기관(시군, 언론, 민간사회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추진과제 점검 및 대안 마련
- 주요 현안 발생 시 중앙정부 대책 마련 촉구 등 공조

③ 인구소멸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 및 인식개선

- 도의회 홍보 콘텐츠(SNS, 유튜브)를 활용한 인구 이슈 공론화 및 출산·돌봄 정책 홍보 등
-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개최

④ 국내·외 인구감소지역 현지 시찰 및 정책 벤치마킹

- 인구감소지역 현지 시찰 및 공무국외출장 등 추진
- 지역·국가별 현황 비교 분석 및 모범사례 도입 검토

⑤ 충북 지역 여건 및 수요를 고려한 특화사업 발굴 등

- 의원연구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
 - 인구소멸을 둘러싼 개념과 이론적 논의 재검토
 - 충북의 현황 분석을 통한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고유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 생활인구 유치, 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
- 이해관계자 간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

IV

세부일정(안)

구 분	기 간	활동계획(안)
1월 임시회 (제423회)	1.20.(월)~1.24.(금) (5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특별위원회 개최 - 외국인정책추진단 등 특별위원회 사무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학술연구용역 착수
3월 임시회 (제424회)	3.12.(수)~3.21.(금) (10일간) 누계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차 특별위원회 개최 도내 인구감소지역* 현장 시찰 * 제천,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4월 임시회 (제425회)	4.21.(월)~4.30.(수) (10일간) 누계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차 특별위원회 개최 인구감소지역 주민 의견 수렴 간담회
2025년 5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국외출장 추진
6월 정례회 (제426회)	6. 9.(월)~6.24.(화) (16일간) 누계 4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차 특별위원회 개최 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
7월 임시회 (제427회)	7.14.(월)~7.22.(화) (9일간) 누계 5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차 특별위원회 개최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9월 임시회 (제428회)	9.3.(수)~9.16.(화) (14일간) 누계 6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차 특별위원회 개최 타시·도 생활인구 유치 모범지역 벤치마킹
10월 임시회 (제429회)	10.13.(월)~10.21.(화) (9일간) 누계 7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차 특별위원회 개최 정책 토론회 개최
11월~12월 (제430회)	11.3.(월)~12.15.(월) (43일간) 누계 1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차 특별위원회 개최 공공산후조리원 등 유관기관 현장 방문
2026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차 특별위원회 개최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활동결과 본회의 보고

※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유동적으로 일정 운영

IV

행정사항

소관부서	주요내용	비고
총무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의정활동 시 차량 지원 등	
홍보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sns 채널 등 홍보 콘텐츠 활용한 홍보 지원• 사진·영상 촬영 지원	
의사입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 속기 및 기록 관리	
의회운영전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장 관리, 회계 처리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부서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등	

참고 1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번호	제680호
의결 연월일	2024년 9월 2일 (제420회)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4년 9월 2일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680
----------	-----

발의연월일 : 2024년 9월 2일

발의자 : 운영위원장

1. 주문

- 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5조 규정에 따라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동 위원회는 충청북도 저출생·고령화 관련 현안에 대한 대응 상황 점검 및 쟁점 논의를 통하여 인구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 다. 인구소멸대응 대책 추진 체계가 실효성 있게 구축될 수 있도록 인구정책 추진제도 개선, 인구교육 강화, 인구정책 대응 지역사회 기반 조성, 인구 감소지역 대응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 라.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하되, 필요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마.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가. 우리나라 인구는 이미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2024년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또 역대 최저를 기록함. 한국의 출산율은 201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에서 더욱 심각한 실정임.

*합계출산율 :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나. 충북은 전체 11개 기초지자체 중 6개(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제천)가 행안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체 인구 또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다. 인구감소는 곧 지역성장 잠재력 저하 및 지역소멸을 초래하므로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막고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점검 및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함.

라. 또한, 각 시·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인구정책 대응과 연계한 다양한 분야(일자리, 경제, 의료, 보육, 주거 등)의 사업이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한 충청북도가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함.

3.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5조, 제38조, 제39조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5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히 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39조(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 등)** ①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 ③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
- 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